



## 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에 대한 표시방법

제정 1995. 7. 1 환경부고시 제1995-72호  
개정 1999. 8. 6 환경부고시 제1999-123호  
개정 2001. 7. 7 환경부고시 제2001-9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화학물질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화학물질)** ①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·소방법·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(고시 포함)의 개정으로 제4조 각호의 법률에 의한 2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새로이 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다.

**제3조(표시사항 등)**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2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별표 2의 표시사항에 기재하여야 할 화학물질별 유해성,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은 유



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질 중 해당 유독물질의 표시사항의 유해성,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과 같다.

**제4조(해당법령의 범위 등)**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질의 표시
2.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
3. 소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의 표시

부 칙(1995. 7. 1)

이 고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8. 6)

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7. 7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(표1 대상 화학 물질)

화 학 물 질 명	해 당 적 용 법 령		
	유해화학물질 관리법	산업안전 보 건 법	소 망 법 (류별, 품목)
과산화나트륨 [Sodium peroxide]	○	-	제1류
과산화수소 [Hydrogen peroxide]	○	-	제6류
나트륨 [Sodium]	○	-	제3류
2-나프틸아민 [2-Naphthylamine] 및 그 염 산염	○	○	제4류 (제3석유류)
납화합물 [Lead compounds] (시산화납, 황산납, 염기성탄산납 제외)	○	○	-
니켈 카르보닐 [Nickel carbonyl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니트로 벤젠 [Nitrobenzene]	○	-	제4류 (제3석유류)
2,4-디니트로페놀 [2,4-Dinitrophenol]	○	-	제5류
디-n-부틸아민 [Di-n-butylamine]	○	-	제4류 (제2석유류)
무수크롬산 [Chromic anhydride]	○	○	제1류
메탄올 [Methanol]	○	-	제4류 (알코올류)
4,4'-메틸렌비스(2-클로로아닐린) [4,4'- Methylenebis(2-chloroaniline)]	○	○	제4류 (제3석유류)
메틸 비닐 케톤 [Methyl vinyl ketone]	○	-	제4류 (제2석유류)
메틸 에틸 케톤 [Methyl ethyl ketone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메틸 클로로아세트산 [Methyl chloroacetate]	○	-	제4류 (제2석유류)
메틸히드라진 [Methylhydrazine]	○	-	제5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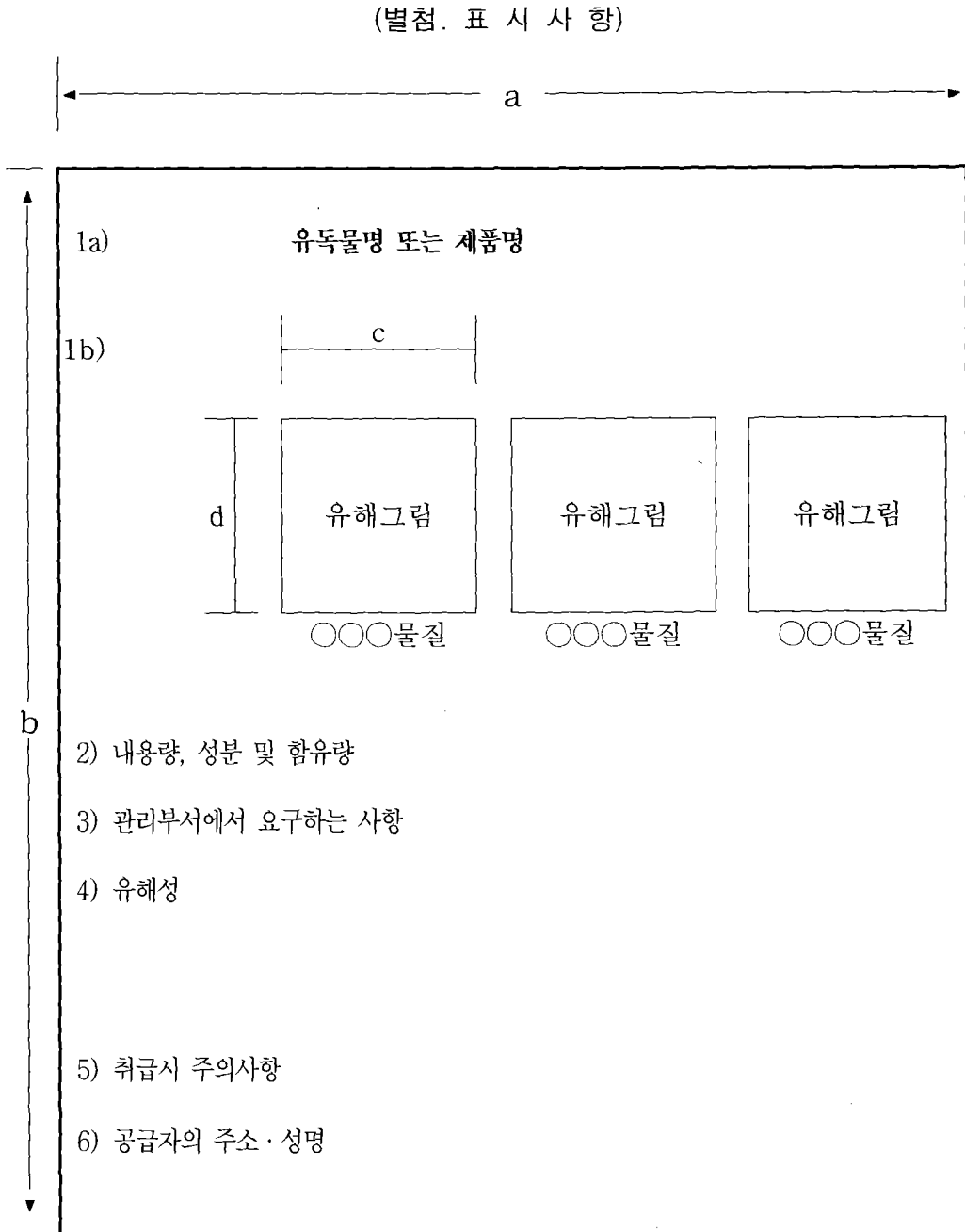
화 학 물 질 명	해 당 적 용 법 령		
	유해화학물질 관리법	산업안전 보건법	소 방 법 (류별, 품목)
벤젠 [Benzene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벤젠아세토니트릴 [Benzeneacetonitrile]	○	-	제4류 (제3석유류)
벤지딘 [Benzidine] 및 그 염산염	○	○	-
불화 수소산 [Hydrofluoric acid Solution]	○	○	-
브롬화 메틸 [Methyl bromide]	○	○	-
비스(클로로 메틸) 에테르 [Bis(chloro methyl)ether]	○	○	-
사염화 탄소 [Carbon tetrachloride]	○	○	-
산화제2수은 [Mercuric oxide]	○	○	-
삼산화 비소 [Arsenic trioxide]	○	○	-
시안화 나트륨 [Sodium cyanide]	○	○	-
시안화 수소 [Hydrogen cyanide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시안화 칼륨 [Potassium cyanide]	○	○	-
시클로헥실아민 [Cyclohexylamine]	○	-	제4류 (제2석유류)
아닐린 [Aniline]	○	-	제4류 (제3석유류)
4-아미노비페닐 [4-Aminobiphenyl] 및 그 염산염	○	○	-
아세트산 에틸 [Ethyl acetate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아염소산 나트륨 [Sodium chlorite]	○	-	제1류
아크롤레인 [Acrolein]	○	-	제4류 (특수인화물류)



화 학 물 질 명	해 당 적 용 법 령		
	유해화학물질 관리법	산업안전 보 건 법	소 방 법 (류별, 품목)
아크릴로 니트릴 [Acrylonitrile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아크릴 아미드 [Acrylamide]	○	○	제4류 (제3석유류)
알릴 알콜 [Ally alcohol]	○	-	제4류 (제2석유류)
N-알킬아닐린 [N-Alkyl aniline]	○	-	제4류 (제3석유류)
염소산 나트륨 [Sodium chlorate]	○	-	제1류
염소산 칼륨 [Potassium chlorate]	○	-	제1류
염화비닐 [Vinyl chloride]	○	○	-
염화제이수은 [Mercury(II) chloride]	○	-	-
염화카드뮴 [Cadmium chloride]	○	○	-
요오드화메틸 [Methyl iodide]	○	○	-
1,2-이염화에탄 [1,2-Dichloroethane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이황화탄소 [Carbon disulphide]	○	○	제4류 (특수인화물류)
중크롬산 염류 [Dichromic acid, salt]	○	○	제1류
질산 [Nitric acid]	○	-	제6류
질산아연(6수화물) [Zinc nitrate]	○	-	제1류
질산은 [Silver nitrate]	○	-	제1류
질산 카드뮴 [Cadmium nitrate]	○	○	제1류
칼륨 [Potassium]	○	-	제3류
크레졸 [Cresol]	○	○	제4류 (제3석유류)
크롬산 염류 [Chromic acid, salts]	○	○	-
크실렌 [Xylene] (o-, m-, p- 이성질체 포함)	○	○	제4류 (제2석유류)
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[Chloromethyl methyl ether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


화 학 물 질 명	해 당 적 용 법 명		
	유해화학물질 관리법	산업안전 보 건 법	소 방 법 (류별, 품목)
2-클로로에탄올 [2-Chloroethanol]	○	-	제4류 (제2석유류)
클로로포름 [Chloroform]	○	○	-
테트라클로로에틸렌 [Tetrachloroethylene]	○	○	-
톨루엔 [Toluene]	○	○	제4류 (제1석유류)
톨루이딘 [Toluidine] (o-, m-, p- 이성질체 포함)	○	○	제4류 (제3석유류)
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[Trichloro acetonitrile]	○	-	제4류 (제3석유류)
트리클로로에틸렌 [Trichloroethylene]	○	○	제4류 (제2석유류)
페놀 [Phenol]	○	○	제4류
페닐히드라진 [Phenylhydrazine]	○	-	제5류
펜타클로로페놀 [Pentachlorophenol]	○	○	-
포르말린 [Formalin]	○	○	제4류 (제2,3석유류)
N-2-프로펜일-2-프로펜-1-아민 [N-2- Propenyl-2-propen-1-amine]	○	-	제4류 (제1석유류)
피시비 [PCBs]	○	○	-
황린 [Yellow Phosphorus]	○	○	제3류
황산 [Sulfuric acid]	○	-	제6류
황산디메틸 [Dimethyl sulfate]	○	○	제4류 (제3석유류)
황산디에틸 [Diethyl sulfate]	○	-	제4류 (제3석유류)
황산 카드뮴 [Cadmium sulfate]	○	○	-
황화린 [Phosphorus sulphides]	○	-	제2류
히드라진 [Hydrazine]	○	-	제5류
히드라진 수화물 [Hydrazine hydrate]	○	-	제5류





(표시요령)

1. 규격

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	규격
500ℓ 이상	$450\text{cm}^2(a \times b)$ 이상 $0.25b \leq a \leq 4b$ $0.1(a \times b) \leq c \times d$
200ℓ 이상 500ℓ 미만	$300\text{cm}^2(a \times b)$ 이상 $0.25b \leq a \leq 4b$ $0.1(a \times b) \leq c \times d$
50ℓ 이상 200ℓ 미만	$180\text{cm}^2(a \times b)$ 이상 $0.25b \leq a \leq 4b$ $0.1(a \times b) \leq c \times d$
5ℓ 이상 50ℓ 미만	$90\text{cm}^2(a \times b)$ 이상 $0.25b \leq a \leq 4b$ $0.1(a \times b) \leq c \times d$
5ℓ 미만	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% 이상 $0.25b \leq a \leq 4b$ $0.1(a \times b) \leq c \times d$

2. 색상

가. 전체표시의 바탕은 흰색이나 용기·포장자체의 표면색, 테두리 및 문자는 검정색. 다만, 용기·포장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한다.

나.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(오렌지색), 테두리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.

3. 세부 표시사항

가. 1a) 유독물명 또는 제품명 : 별표1에 해당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하여 단일물질인 경우 화학물질명을 표시하고, 혼합물질인 경우 관용명 또는 제품명을 표시한다.

나. 1b) 유해그림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유해그림을 표시한다.

다. 내용량, 성분 및 함유량 : 기재

라. 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: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표시한다.





**(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경우)**

- 1) 제조금지물질 : "제조금지"
- 2) 허가대상 화학물질, 유기용제 : "유해물질"

**(소방법에 해당되는 경우)** : 소방법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1의 소방법란의 류별, 품목 및 다음의 류별구분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다.

- 1) 제1류 위험물
  - 무기과산화물 및 삼산화크롬 : "화기·충격주의,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"
  - 그 밖의 것 : "화기·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"
- 2) 제2류 위험물
  - 철분·금속분 또는 마그네슘 : "화기주의","물기엄금"
  - 그 밖의 것 : "화기주의"
- 3) 제3류 위험물
  - 자연발화성 물품 : "화기엄금 및 공기노출 엄금"
  - 금수성물품 : "금수성"(물기 엄금)
- 4) 제4류 위험물 : "화기 엄금"
- 5) 제5류 위험물 : "화기 엄금 및 충격주의"
- 6) 제6류 위험물
  - 과염소산, 과산화수소, 질산 : "가연물 접촉주의"
  - 황 산 : "물기 주의"

마. 유해성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유해성을 표시한다.

바. 취급시 주의사항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

사. 공급자의 주소·성명 : 기재